

●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236호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1일

산업통상부장관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글로벌 공급과잉,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·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5. 12. 16, 법률 제21202호)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(안 제2조~제3조)

나. 실증시험·성능검증 지원신청서, 경쟁력강화 계획서,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,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,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,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,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,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(안 제4조~제7조, 제9조~제12조)

다.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(안 제8조)

라. 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
- 전자우편 : songseokwon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(전화 (044) 203 - 46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